『ATS 시장감시수수료 부과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3. 4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제도부

Ⅰ 연구용역 개요

1 연구용역 개요

□ 연구주제 : 「**ATS 시장감시수수료 부과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 연구기간 : ‘23. 4월 ~ ’23. 7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사업예산 : **7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 연구기관 :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

□ 주관부서 :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제도부

2 추진 일정

구분	일정
① 입찰공고	’23. 04. 07.
② 입찰참가신청 접수 마감	’23. 04. 17.
③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	’23. 04. 18.
④ 기술능력 평가 및 가격 평가	’23. 04. 24. 예정
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⑥ 기술 및 가격 협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
⑦ 계약체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
⑧ 1차보고서 제출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⑨ 최종보고서 제출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 1) 세부 추진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본 입찰이 유찰(단독응찰 또는 무응찰)되는 경우 입찰공고기간 추가로 소요

3 연구범위(안)

□ **(연구용역 추진배경) '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이 허용**됨에도 **설립 추진이 보류**되었으나, 최근 ATS 거래량 한도*를 상향, 증시 규모의 확대**로 **ATS 설립 움직임이 재개*****

* '16년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량 한도가 (시장전체)5%→15%, (종목별)10%→30%로 상향
** '20년 팬데믹 이후 유동성 확대 등으로 거래대금 대폭 증가('16년 1,948조원→'21년 6,768조원)
*** 금투협 컨소시엄(넥스트레이딩) '24년 출범 목표로 추진중(준비법인 설립完)이며, 금융위 또한 '23년 내 본인가 진행하고자 함

○ 시감위는 지정거래소로서 기존 거래소 시장뿐만 아니라 **ATS 시장의 시장감시업무도 수행**할 예정(자본시장법상 수행근거 存)

- 이에 따라, **추가자원의 투입은 불가피**하며(시스템 구축, 추가인력 투입 등), 비용 충당 측면에서의 **수수료 부과 당위성**이 있음

○ 그러나, 거래소의 **현행 수수료 체계**상 규제 **관련 수수료를 별도 부과하지 않아** ATS 시장에 대한 시장감시 **수수료 부과의 합리적인 판단 근거 부존재**

☞ 수수료 부과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ATS 시장운영자와 협상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

□ **(ATS시장 도입시 시장감시 업무)** 시감위가 **현재 수행하는 시장감시**업무 대비, **ATS 시장에 제공하는 시장감시**의 범위(감시-심리-감리-예방활동 프로세스)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ATS에서는 **상장주권 및 DR만 거래 가능**하므로, **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한 시장감시**는 제공 **서비스 범위에서 제외**

< ATS 도입(KRX시장+ATS시장)후 시장감시 업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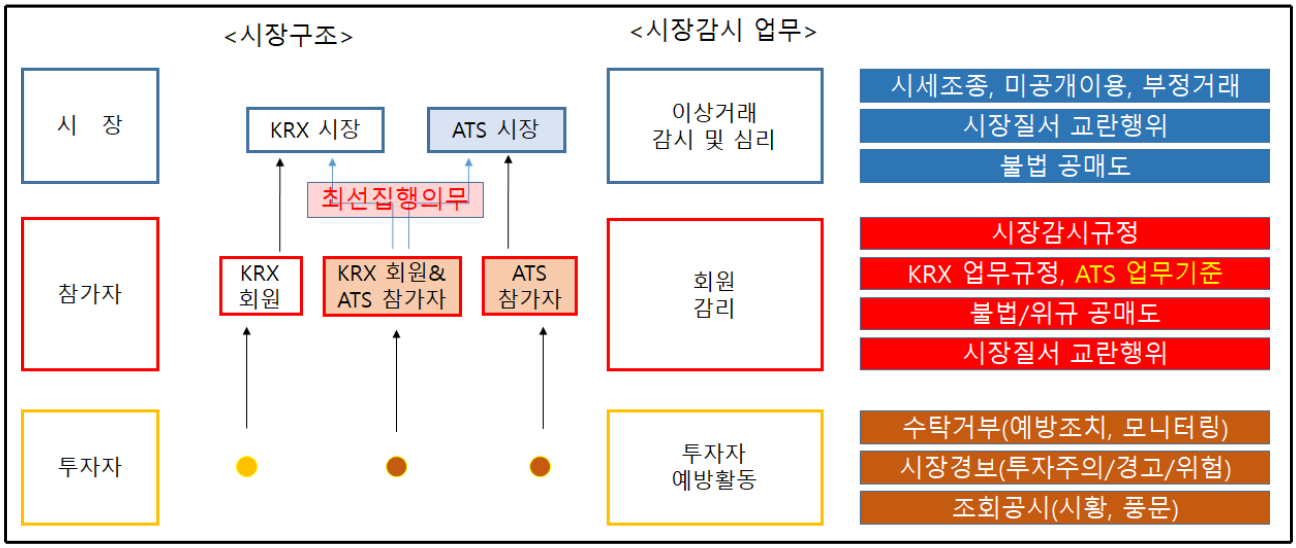

□ (연구용역 세부과제)

1 시장감시 현황 및 현행 수수료 체계 분석

○ **(시감위의 업무 범위 정의)** 시감위가 수행하는 **시장감시 관련 제반 업무** 및 **업무단위별 프로세스를 정의***

* ATS시장에 제공하는 업무서비스 범위 명확화 목적

- 시장감시 업무의 특징 및 현황(조직 및 업무분장 등) 분석

○ **(현행 수수료 체계 분석)** 현행 **거래수수료 체계를 분석***하고 **시장감시서비스 소요원가** 및 **거래수수료 내 시장감시서비스 비중** 등을 추정 산출

* 시감위가 수행하는 시장감시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수수료에 포함

- 현행 시장감시 업무의 원가분석 방법론(원가대상 항목 정의, 직접비·간접비 산정 방안 등) 도출

○ **(시장감시 수수료 부과 필요성 도출)** ATS시장에 대한 감시 **수수료 부과의 당위성 확립**을 위한 근거 마련

2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 **(국내 사례 조사 및 분석) 국내 증권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의 **수수료** 또는 **분담금 산정 및 부과방안**에 대한 **유사사례 검토**

○ **(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시장감시 또는 규제수수료 관련 **해외의 수수료 체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부과대상, 부과기준, 수수료율, 부과방식 등

- 주요거래소(JPX, NYSE, LSE 등) 및 자율규제기구(FINRA, IIROC, ASIC 등)의 (ATS시장) 시장감시 또는 규제수수료 부과 사례 검토

- 주요 해외 사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ATS시장감시 수수료 부과방안 관련 시사점 도출

3 ATS시장에 대한 수수료 부과방안 검토

○ **(수수료 부과 기본방향 및 기본전제)** ATS 시장감시 수수료 부과의 기본원칙, 부과대상 등 **기본적 개념 정립**

- 시장감시 수수료 부과 근거에 대한 검토 및 보완책 제언

- 해외사례 비교 등을 통하여 부과대상(시장참여자 또는 시장운영자) 선정을 위한 검토 및 근거 마련

○ **(시장감시 수수료 산정 방식) ATS 시장감시 수수료 산정**에 관한 **분석방법론 수립**(합리적 수준의 비용 인정 항목, 범위, 산출방식 등)

- 다양한 시장감시 수수료 산정 기준 비교·분석과 여러 가지 대안 도출 및 장·단점 비교

- 수수료 부과를 위한 연간 적정 회수원가 규모 도출

○ **(시장감시 수수료 부과방안)** 시장감시 수수료 부과기준 및 부과방안에 대한 검토

- 적정 수수료 금액 또는 수수료율 범위를 제시하고, 대안별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안 도출

-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 설정 및 시뮬레이션 수행

- ATS 시장감시 수수료 운영 방안(수수료 산정 및 납부시기, 원가 산정 적정 주기 등)

○ 기타 이해관계자(금융당국 등) 설득을 위한 근거 및 협상 전략 등 제공

4 사후관리 및 지원

○ **(주요 이해관계자별 커뮤니케이션)**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 개최, 피드백에 대한 대응책 등

○ **(발생 이슈에 대한 사후지원)** 최종 부과방안 확정까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에 따른 시뮬레이션 재작성 지원 등

○ 기타 최종 방안마련·이해관계자 협의·설명회 등을 위한 추가 자료 지원 등

※ 구체적 ·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용역기관 선정 후 협의를 통하여 확정할 예정

Ⅱ 입찰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 동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제안기관은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이어야 함

ㅇ 기타 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고,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분담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어야 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 불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제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문서로 제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별지 9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양식 참조)

2 사업자 선정방식

□ **(선정방식) 일반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기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순서에 따라 우선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완료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결렬 사유 등을 기술한 문서를 양사가 날인 작성하고 차순위자와 협상하며 이후 절차는 동일함

□ **(평가기준) 기술능력 평가 80% 및 가격 평가 20%**

※ 단, 입찰가격 평가는 전자입찰에 의함

ㅇ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첨1>에 의함

3 제안서 평가

□ **(일반사항)** 기술능력에 대해 제안서 검토 후 평가

ㅇ 평가 장소 : ㈜한국거래소
ㅇ 평가 일시 : 입찰참가 마감 후 별도 통보 예정
ㅇ 평가위원 구성 : 한국거래소 계약규정에 의거 구성
ㅇ 점수 산정 :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 제외한 산술평균

□ **(평가결과)** 제안기관은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내부 평가위원이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4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되,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Ⅲ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 입찰 참가신청

가.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별지 제7호 서식) 각 1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旣등록시 제출 불필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 대리인 참가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리인으로 旣등록시 위임장 제외
(재직증명서는 제출)

□ 확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보증서

ㅇ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ㅇ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서
ㅇ 보험증권등의 납부시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며,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상 되어야 함

※ 제출문서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하며, 개인정보 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마스킹 또는 숨김 처리 후 제출(이하 같음)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합의각서(컨소시엄 구성시)

나.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4. 17(월) 14:00까지 (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59층
(부산국제금융센터)
총무부 장초롱 과장(☎ 051-662-2184)

□ **(제출방법)** 방문 혹은 우편접수*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 입찰을 무효 처리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 서류

□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 제안서 10부(30페이지 이내/밀봉제출)

□ 제안서의 내용이 담긴 USB 2본

□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업무수행 주요 실적, 참여인력 이력 사항(별지 제3호~제6호 서식)

□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식)

* 동 용역에 참가하는 전체 인원이 각 1부씩 작성 및 제출 필요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반드시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동봉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제안서, USB」 , ②「그 외 서류일체」)
☞ **제안서를 작성한 담당자 명함**(성명 및 연락처) **등 포함**

※ 상기문서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하며,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음영처리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3. 4. 18(화) 14:00**까지 (마감시한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 Market Tower1(신관) 11층
총무부 박성신 대리(☎ 02-3774-4503)

□ **(제출방법)** 방문 혹은 우편접수*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 입찰을 무효 처리

다. 가격입찰서 투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을 통해 전자투찰

ㅇ 가격투찰기한 : **2023. 4. 18(화) 14:00** 까지

ㅇ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고, 투찰 후에는 수정 불가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 투찰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상세산출내역서 파일을 첨부할 것

ㅇ 나라장터 미등록 기관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라.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출하는 제안서는 「Ⅲ.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Ⅳ. 주의사항 안내」 및 「Ⅴ. 제안서 작성」을 참조하여 자유로이 작성

ㅇ 다만, 내용은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으며, 기관이 판단하여 추가할 내용은 추가할 수 있음

□ 회사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Ⅳ 주의사항 안내

1 일반사항

□ 연구기관은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연구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용역은 본 제안요청서와 관계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각종 통계 자료는 국가 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함

□ 시장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 사용시 범위, 대상자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목적에 맞는 통계기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연구기관은 용역완료(납품)후에라도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한국거래소는 용역이 일정대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한국거래소의 용역 진행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시 연구기관은 즉시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만일,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제안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2 주의사항

□ 제안기관이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제안기관이 책임을 부담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기한 이후 도달한 제안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자료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제안기관은 ㈜한국거래소의 해석에 따라야 함

□ 제안기관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본 용역 수행과정 및 동 결과 등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대외 누설을 금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한국거래소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함

□ 연구기관은 ㈜한국거래소의 승인 없이 연구용역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한국거래소의 별도요청 또는 승낙이 없는 한 일체의 수정, 추가 및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의 부담이며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한국거래소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기관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음

□ 본 사업의 용역범위를 정함에 있어 제안요청서에 요청하지 않은 업무 또는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업무일지라도 상호 협의에 따라 용역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용역 수행은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예정 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 ㈜한국거래소는 선정된 기관과 본 사업의 전반에 대한 추진내용이 명시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며 동 기관은 본 사업의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제작물의 소유권 및 사용에 필요한 모든 권리는 ㈜한국거래소에 귀속되며, 제안기관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짐

□ 제안기관의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기관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함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 오·탈자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1차에 한하여 보완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가격투찰시 제안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하며, 상세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 가격제안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음. 다만,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을 우선함

3 보안사항

□ 제안기관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제안기관은 PC 등을 반입시 발주기관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같은 ㈜한국거래소의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4 기타

□ 제안서에 기재된 인력과 본 사업 수행시 실제 투입 인력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며, 변동이 필요할 경우 ㈜한국거래소와 사전에 협의 후 문서요청 및 승인절차가 필요함

□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의를 통해 제안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원본과 파일로 작성하여야 하고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는 전체 30페이지 이내(별지 제외)에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제안기관은 제안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사업에 대한 이해와 임하는 자세,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등을 명확하게 요약·기술하여야 함

□ 타 제안기관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적, 관리적 특징과 장점을 요약하고, 이러한 특·장점이 사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사업 완료후의 기대효과 등을 기술함

□ 제안기관의 연혁, 조직·인원 현황, 자본금 및 매출실적 등의 일반현황과 본 사업에 실제 투입할 전담인력의 이력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을 총괄적으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내용

□ 제안 개요

○ 제안배경, 제안범위, 연구방향, 기대효과

□ 제안기관 일반

○ 일반 현황 및 개요, 조직 및 인원 현황

□ 주요 연구용역 실적(별지 제4호 서식 참조)

○ 연구용역 참여자의 자본시장 또는 수수료 관련 연구용역 실적

□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 및 주제별 연구 수행자

○ 연구진의 전공분야 및 주요 경력(별지 제6호 서식 참조)

○ 연구진의 자본시장 관련 이해도 등

□ 연구용역 추진계획

○ 연구범위(안)을 반영한 세부 추진계획, 차별화 요소

※ 연구범위(안)의 내용 이외에 연구에 필요한 사항 추가 가능

○ 추진일정 및 단계별 산출물

□ 사후관리 및 지원방안

○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 제도 개선 이후 자문·모니터링 등 협력 가능한 사항 제시

(참고사항)

본 연구용역 및 연구범위(안)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에 추가할 내용으로 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별첨 1>

평가항목 및 배점

□ 100점 만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table>
<tr><th colspan="2">평가 항목</th><th>세부 평가 항목</th><th>배점</th></tr>
<tr><td rowspan="7">기술능력평가(80)</td><td>용역기관의 수행 실적 (20)</td><td>▪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또는 수수료 관련 연구용역 수행 실적(연구용역 참여자 실적 건수 합산)
<table><tr><th>20점</th><th>16점</th><th>12점</th><th>8점</th><th>4점</th><th>0점</th></tr><tr><td>10건 이상</td><td>8~9건</td><td>6~7건</td><td>4~5건</td><td>2~3건</td><td>1건 이하</td></tr></table></td><td>20</td></tr>
<tr><td>투입 인력 규모 (10)</td><td>▪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투입할 인력의 數
<table><tr><th>10점</th><th>8점</th><th>6점</th><th>4점</th><th>2점</th><th>0점</th></tr><tr><td>6명 이상</td><td>5명</td><td>4명</td><td>3명</td><td>2명</td><td>1명 이하</td></tr></table></td><td>10</td></tr>
<tr><td>투입 인력의 전문성 (10)</td><td>▪ 투입 인원 중 전문가*의 인력의 비율
<table><tr><th>10점</th><th>8점</th><th>6점</th><th>4점</th><th>2점</th><th>0점</th></tr><tr><td>70% 이상</td><td>60%이상 ~70%미만</td><td>50%이상 ~60%미만</td><td>40%이상 ~50%미만</td><td>30%이상 ~40%미만</td><td>30% 미만</td></tr></table></td><td>10</td></tr>
<tr><td rowspan="4">수행 계획의 적정성 (30)</td><td>▪ 연구과제에 대한 이해도</td><td>10</td></tr>
<tr><td>▪ 연구방향 및 연구일정의 타당성</td><td>10</td></tr>
<tr><td>▪ 연구계획 세부 추진방안의 적정성</td><td>5</td></tr>
<tr><td>▪ 연구결과의 활용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td><td>5</td></tr>
<tr><td>사후관리 계획 (10)</td><td>▪ 사후 지속 네트워크 유지 및 필요시 자문 제공 등</td><td>10</td></tr>
<tr><td colspan="2">입찰가격평가(20)</td><td>-</td><td>20</td></tr>
<tr><td colspan="3">합 계</td><td>100</td></tr>
</table>

* 금융투자업계 등 관련 업종 근무경력자(3년 이상) 및 변호사, CPA, CFA, FRM 限

□ 아래의 평가등급별 환산점수에 배점을 곱하여 계산

평가등급	S	A	B	C	D
환산점수	1	0.9	0.8	0.7	0.6

□ 다만, 연구용역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적용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
ㅇ 자본시장 및 수수료 관련 연구용역 수행실적* - 단일 용역 5천만원 미만은 1건으로 계산 - 단일 용역 5천만원 이상은 2건으로 계산 - 단일 용역 1억원 이상은 3건으로 계산 - 단일 용역 3억원 이상은 4건으로 계산 - 단일 용역 5억원 이상은 5건으로 계산	20	- 10건 이상 : 20 - 8~9건 : 16 - 6~7건 : 12 - 4~5건 : 8 - 2~3건 : 4 - 1건 이하 : 0

* 연구용역 참여 (책임)연구원이 각각 수행한 최근 용역(최근5년) 건수를 단순 합산 (단, 책임연구원, 연구원이 동일 내용 수행 시 합산에서 제외, 단일건으로 적용)